# 2022년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공고문

경북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예술창작 역량 강화 및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2022년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2년 양대 선거전 60일 이후 사회단체 개최 행사 금지 】

- ▶ 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제 86조 제2항의 제한기간 중(선거일 전 60일 이후)이 아닌 때에 행사를 위한 보조금 등을 동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한기간 중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운용함. 한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 ▶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 시기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 · 행사 개최/후원 판단기준 : 경비 제공 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
  - 행사 개최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 대통령 선거 : 2022. 1. 8. ~ 3. 9. / 지방선거 : 2022. 4. 2. ~ 6. 1.

2022. 1. 28.

경 북 문 화 재 단 대 표 이 사

# 1 공모 개요

- O 추진목적
  - 예술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발전
  - 경북의 지역적·역사적 배경의 소재로 한 창작공연 활성화

O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380백만원

O 지원대상 : 경북도 내 전문공연예술단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분야	지원 대상 단체	
연 극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극단	
무 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음 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전통예술	국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공연전문단체	

- 지원규모 : 단체당 20 ~ 40백만원
- O 지원내용
  - 창작 및 공연에 필요한 직접적 경비(인건비, 홍보비, 공연장 임대비 등)\

# 2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 경북도 내 3년 이상 소재지 및 최근
		3년간(2019~2021) 매년 1회 이상 공연
	• 경북도 내 2년 이상 소재지 및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 <b>(※코로나 19로</b>
시청자건	중인 예술단체, 단 울릉군에 소재한	인해 2020,2021년는 총 1회이상 사업
│ 신청자격 │	단체는 소재지 2년 미만인 경우도 인	<b>진행시 사업실적 인정)</b> , 단 울릉군에
	정	소재한 단체는 소재지 3년 미만인 경
		우도 인정 및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
		연실적

- 원작의 80% 이상 각색 필수
- 공연작품 창작 및 3회 이상공연
- 경북도내 실내 및 야외 공연장 공연

#### 지원영역

- 도외에서 공연 1회 추진가능
- 쇼케이스 및 공개 리허설 시 공연 횟수 인정
- 재단 통합발표회 및 추천 공연 참여 시 공연 횟수 인정
- 각색 없는 원작 공연 불가
- 공연작품 창작 및 1회 이상공연
- 경북 도내 공공 공연장 규모의 장소에서 공연

# 3 세부내용

### O 사업대상

- 경북지역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창작하거나 원작을 새롭게 각색한 작품(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전통예술(국악))

### O 자격요건

- 경북도 내 3년 이상 소재지 및 최근 3년간(2019~2021) 매년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예술단체, 단 울릉군에 소재한 단체는 소재지 3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 및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연실적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2021년간에는 1회이상 공연도 실적 인정

# O 세부조건

- 각색 없는 원작 공연 불가
- 경북 도내 공공 공연장 규모의 장소에서 1회 이상 공연
- 공연예술분야(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전통예술 등) 창작초연 작품 또는 원작을 각색한 공연
- 지역정체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내 연계 가능 사업
- 경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O 필수증빙자료 ※지원신청서에 첨부

- 단체 증빙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단체 설립은 위 증빙서류의 최초발급 년월로 확인함
- 활동실적 증빙자료 및 작품자료

- ※ 지원신청 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 신청자가 제출하는 활동실적 자료에는 행사명, 행사일시, 주최·주관, 출연자,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 ※ 최근 3년(2019~2021) 매년 1회 이상 사업 증빙 자료
- 공연작품 대본 또는 악보 등
  - ※ 작품이 미완성 경우 '세부 사업계획서'에 장면 연출 계획, 줄거리 개요 등 세부 기술
- 참여인력 명단 및 프로필

#### ○ 코로나19 안내 사항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포기 시 패널티(차기년도 사업 제외) 미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일시, 장소 변경, 관람객 인원규모, 홍보마케팅등 사업 변경에 대한 전체 지침 완화
- 사업비로 사업 관련 필요 적정량 시설방약(소독)비, 공공방역용품(손세 정제 등) 구입 등 가능
- 온라인 공연 및 전시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관객모객이 어려울 경우, 공연실황 온라인(유튜브, 네이버 TV 등)으로 생중계로 대체
    - ※ 사업 녹화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과 단체 공동으로 소유.단,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O 유의사항

-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 지원 사업별 신청자격, 필수 제출서류 등 확인
- 지원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시, 교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행정조치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면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포기 신청서'제출 필수 ※ 1개월 이후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 포기신청의 경우 차기년도
  - 사업신청이 제한됨. 단.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는 예외
- 신청서 입력 후 반드시 "최종제출"을 클릭해야 신청서가 제출됨

# 4 심의절차

# O 심의방침

- 국내 문화예술계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전문성 확보
- 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심의위원 및 심의 절차와 평가기준 등 심의결과 공개

### O 심의절차

1차 심의 (행정 심의)	행정심의-신청자격 부합 여부(자격조건, 전년도 정산여부 등), 필수자료 제출 여부 등 서류에 대한 내부 검토
▼	
2차 심의 (위원회)	서류심의 및 인터뷰 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 외부(경상북도 외) 심의위원 비율 2/3 이상 위촉 심의위원 선발 : 전문가 추천 인력풀 구성 및 선발
결과 발표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확인

<sup>\*</sup>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사일정과 심사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O 심의일정

- 위원회 심의 : 2022. 2. 23(수) ~ 2. 25(금)(예정)

- 심사 결과 : 2022. 2. 28(월)(예정)

## O 심의기준

심사항목	배점	심 사 기 준	
	계 (100)		
사업 계획의	20	• 사업 계획의 구체성, 적합성, 실현가능성	
충실성·타당성	20	• 사업목적과 활동의 연계성 및 사업 계획의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작품의 우수성	30	<ul> <li>경북의 문화역·역사적 배경의 사업 프로그램 구성.내용 등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li> <li>관객 참여 및 호응도 증대를 위한 예상 기여도</li> </ul>	
• 기획, 연출, 안무, 작가, 작품 구성 등 제작진의 역량으로 예측			
예산계획의 적절성	20	• 지원 신청금의 타당성, 확보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홍보계획	10	<ul> <li>사업 작품소개,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등</li> </ul>	

# 5 접수 및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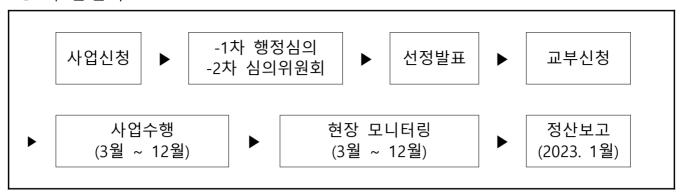
- O 접수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 28(금) ~ 2. 14(월) 18:00 (총 18일간)
  - ※ 접수기간 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만 접수가능
  - ※ 접수마감일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 ※ 신청시 유의 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O 신청방법
  - 신청단체 : 경북도 내 전문공연예술단체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 (우편 및 방문 불가)
    - 신청서 입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 신청서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에 등록
    - ※ 관련 문의처 : 시스템 고객센터 ☎1577-8751
- 구비서류 : 상기 신청서에 첨부 (hwp파일형태로 제출)

필수제출자료
1. 지원신청서 1부
· · · · · · · · · · · · · · · · · · ·
2. 단체소개 1부
3. 창작활동계획서
4. 활동증빙자료
5. 단체등록증 1부
6. 전문예술인 법인·단체 지정서 1부
7. 개인정보동의서 1부
8.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1부

# O 추진절차



# 6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목	세 목	집 행 항 목	비고
		용역비(기획사/대행사 등 외부업체 아웃소싱 비용)	기획사 등에 단순 재교부 금지
		사례비(출연료, 심사, 원고료, 번역료, 기획, 보조인력 등)	지급금액이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홍보 및 마케팅비(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반드시 명기
	일반 수용비	제작비(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전문업체와 거래할경우 편성 (개인 전문가와 거래는 사례비)
		수선비(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전문업체와 거래할경우 편성 (개인 전문가와 거래는 사례비)
운영비		재료비(미술, 사진 등)	
		수수료(회계검사 수수료)사업규모수수료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290,000원3천만원 ~ 4천만원 미만346,000원	타행 이체 수수료, 공인인증 수수료 등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불가 →자부담 집행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부가세, 우편료 등)	
	임차료	대관료(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사용, 부대시설 사용 등)	공공 공연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 해야하는 연습실, 사무실, 공연장에 대한 유료대관항목 편성 불가
		임차료(장비, 소품 대여비 등)	장비 등 자산구매, 취득은 불 가능하며 임차만 가능
여비	국내여비	[국내] 교통 및 체제비(항공, 숙박, 운송 등)	숙박: 공연 당일(전일)만 허용, 공연 준비를 위한 숙박 불가

	국외여비	[국외] 교통 및 체제비(항공, 숙박, 운송 등)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비(간담회, 식대 등)	총사업비의 10%이내
복리 후생비	복리 후생비	의료, 산재, 고용,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등	예술인고용보험 의무 편성

#### ※ 보조금 편성 및 집행 불가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 당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단체 운영경비.
  - 프로그램 참여한 직접사업비에 대해 사례비 지급가능 함.
- 당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단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예술가 초청 시 창작(재료) 및 발표경비 지급
- 다과비 편성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및 단체
- 당해 연도의 경북문화재단의 다른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 당해 연도의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고 등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동일 여부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간 주요 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의 소속 단체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문화예술 활동
- O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O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O 보조금 수령자의 보조 사업비 단순 재교부 문화예술 활동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문화예술 활동
- 기획사, 학원, 장비 임차 관련 업태 지원 불가
- 최근 3년(2019년~2021년)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에서 법규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및 개인(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경북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O 성희롱·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제재
  -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관련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 기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업이나 단체

#### 【심의배제 대상】

- O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 O 신청제한사항(주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 범위를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 필수제출자료가 미비할 경우(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예시: 실적미달, 행사연도/행사장소/주관 또는 참여 단체명 및 단원 등의 정보가 불명확한 실적자료 등
- 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

####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선정 결정 취소】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선정 취소
-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 대비 사업계획이 대폭축소(사업 기간, 예산 등) 또는 변경(사업명, 주관단체, 사업내용, 공동주최 등) 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또는 지원금 삭감
- 지원 선정 이후라도 미정산,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음

# 7

# 예술인 고용보험 필요경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안내

### □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변경사항

2021년도	2022년도
20%	25%

### □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방법

2021년도	2022년도
예술인의 보수액 = 문화예술용역 관련	예술인의 보수액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 × <u>80%</u>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 × <u>75%</u>
<u>(필요경비 20% 공제)</u>	<u>(필요경비 25% 공제)</u>

### □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사례

다음의 계약내용에 따라 '22.4.15.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계약기간: '22.3.1.~6.30.(4개월), ▲계약금액: 4,000,000원

- ☞ 월평균보수액(750,000원): 보수액 3,000,000원\* ÷ 계약월수 4개월
- \* 보수액(3,000,000원): 계약금액 4,000,000원 × 75%('22년도 필요경비 25% 제외)
- \* 보험료 산정 시 기준보수(80만원) 적용월 평균 보수액 80만원 이하는 전체 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됨

(사례2)

(사례1)

다음의 계약내용에 따라 '22.2.15.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계약기간: '22.1.10.~8.31.(8개월), ▲계약금액: 20,000,000원

- ☞ 월평균보수액(1.875.000원): 보수액 15.000.000원\* ÷ 계약월수 8개월
- \* 보수액(15,00,000원): 계약금액 20,000,000원 × 75%('22년도 필요경비 25% 제외)
- \* 월평균소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제외여부를 재 판단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 '22년도 이전부터 시작된 계약의 경우 보수액 신고방법에 대해 추후 안내예정

### □ 예술인 고용보험료(사업주부담금) 기간별 산정 방법

2021년도 7월~12월	2022년 1월~6월	2022년 7월~12월
<u> 총소득금액 × 80% × 0.7%</u>	<u> 총소득금액 × 75% × 0.7%</u>	<u> 총소득금액 × 75% × 0.8%</u>